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하고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검진 대상자에게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별표6]으로 이동

다. 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호)

-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라. 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마.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 바.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 사. 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 아. 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 (안 별지2호 서식)
-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 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 차.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검진기관

제4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로,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를 “별표 1, 별표 2, 별표 4 또는 별표 5”로,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

제5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5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27년 1월 1일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중전의 별표 5)의 일반검진란 다음에 학생검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학생 검진	가.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 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신청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학생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출장검진기관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구강검진 ☐ 학생검진)
------------	--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제1호의 구강란 다음에 학생검진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제4호의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 조 번호	제 조 국명	제 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	신장 및 체중계							

2	혈압계								
3	시력검사표								
4	청력계기								
5	원심분리기								
6	혈액학검사기기								
7	혈액화학분석기								
8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내용란의 표의 구강란 다음에 학생검진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7. 공휴일 검진 변경사항(실시주기에 “O”로 표기)’의 표의 ‘일요일’ 및 ‘일요일 이외’의 ‘구강()’란 다음에 ‘학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	영유아()	구강()	학생()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일요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4주()	4주()	4주()	4주()	4주()	4주()	4주()	4주()	4주()	4주()
	5주()	5주()	5주()	5주()	5주()	5주()	5주()	5주()	5주()	5주()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일요일 이외	일반()	영유아()	구강()	학생()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철회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 철회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학생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출장검진기관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구강검진 ☐ 학생검진)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 다. 의원 라. 보건소 마.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 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 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 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 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 이라 한다)이 15명 미 만일 경우 임상병리사 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 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4명 미만 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 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 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화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 한 규칙」에 따른 검 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 비고: 1.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 기준 등) ①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학생검진기관</u>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부터 <u>별표 4</u> 까지와 같다.	② ----- ----- <u>별표 5</u>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	③ -----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 ----- ----- ----- ----- -----

현행	개정안
여 <u>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u>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u>별표 5</u>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u>별표 1부터 별표 5</u>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u>별표1, 별표2, 별표4 또는 별표 5</u>-----<u>별표 6</u>----- -----. 1. ~ 4. (현행과 같음) 5. 「<u>학교보건법</u>」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표 6</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u><신설></u>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별표 5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 2027년 1월 1일